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87

발의연월일: 2022. 4. 25.

발 의 자:최인호·김병기·노웅래

박상혁 • 서동용 • 서영교

위성곤 • 유기홍 • 이원택

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8조제1항).

하지만, 최근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문제와 어업인과의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각 지역에 따라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와 수생태계가 다른 반면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 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비어업인의 수산 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리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비어업인의 건전한 레저활동을 통한 어업인과의 갈등 방지 등을 위하여 현행법에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제한 기준을 구체화 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포획·채취 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의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어구, 시기(시간) 및 지역과 수산자원의 종류, 수량 등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고, 포획·채취 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8조제1항·제2항)
- 나. 시·도에서 지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일반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을 별 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반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 다.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8조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어구, 시기(시간) 및 지역과 수산자원의 종류, 수량 등에 관한 기준(이하 "포획·채취제한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획·채취 제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도의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포획·채취 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비어업인은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2의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행 아 혂 개 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 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하여 「수산업법」 제2조제1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할 수 있는 방법, 어구, 시기(시간) 및 지역과 수산자원의 종류, 수량 등에 관한 기준(이하 "포획ㆍ채 취 제한 기준"이라 한다)을 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획ㆍ채취 제 <신 설> 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신 설> ·광역시·시·도 또는 특별자 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 · 도의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생략) <신 설>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 2. (생략) <신 설>

3. ~ 5.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포획・채취 기준이 설정・변경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비어업 인이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 ⑥ 비어업인은 포획·채취한 수 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저장 • 운반 또는 진열하 여서는 아니 된다.

세70조(과태료) (①

- 1. 2. (현행과 같음)
- 2의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 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 장 · 운반 또는 진열한 자
- 3. ~ 5. (현행과 같음)
- 1. <u>제18조제2항</u>을 위반하여 수 1. <u>제18조제5항</u>-----

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